

#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# 1. 제안이유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해당 조례 [별지 서식] '입원환자 서약서 서식' 중 '주민등록번호'를 '생년월일(성별)'로 변경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별지 서식(입원환자 서약서)의 '주민등록번호' 작성란을 삭제하고 '생년월일(성별)' 작성란으로 변경함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2. 5. 19. ~ 6. 8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지 서식] 입원환자 서약서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(성별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지서식] 입원환자 서약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입원환자 서약서 (생략)</p> <p>환자본인 주소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전화번호:    )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명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<u>주민등록번호:</u></p>	<p>[별지서식] 입원환자 서약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입원환자 서약서 (현행과 같음)</p> <p>-----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-----:    )</p> <p>      ---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--)</p> <p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<u>생년월일(성별):</u></p>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본문

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3. 미첨부 사유

조례 내 별표 서식 문구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사항이 없음

4. 작성자 :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이선재(2133-9246)